

의안 번호	263
----------	-----

제출년월일: 2002.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변경안

1.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2년도공유 재산관리계획변경3차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2. 주 요 골 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변경안 심의대상은 용평면 이목정궁도장 부지 추가매입 2필지, 2,181㎡ 및 점유자가 매수신청한 대화리 1000-6번지 대 602㎡ 중 528㎡ 수의 매각입니다.

1) 이목정궁도장부지 추가매입.

2001년에 용평면 이목정궁도장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개인소유 토지에 사용승낙을 받아 시설물을 설치한 상태로서, 부지매입을 위하여 2002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용전리 328-2번지 외1필지 (관리계획 승인 후 분할되어 현재는 3필지 임), 1,876㎡ 매입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추가로 용전리 328번지 외1필지, 2,181㎡를

승인 받아 총 5필지 4,057㎡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 매수신청 잡종재산 처분

대화면 대화리 1000-6번지 대 602㎡ 중 528㎡ 대부계약 점유자(박준정)가 공유 재산 매수를 신청 하였는바, (공시지가 가액이 144,144천원으로 군의회 심의대상 임)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하는 사유는 81.4.30. 이전 건물이 있었던 토지로서, 건물이 노후하여 2002. 3.월 벽체를 개보수 사용하고자 작업 중 침하가 발생하여 구조물이 붕괴되었고, 무너진 건물 잔재의 약취 등 해소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본 토지는 97년 81.4.30. 이전 사유의 건물이 있는 부지로 매각되었으나 IMF 등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해약 처리된 사실이 있으며, 사면이 대부자 등의 건물에 둘러싸인 정중앙 토지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부자 목적(건물 신축)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3. 관계법규 및 지침

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나.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라. 지적도 (사본) 2부

총괄표 (7-1)

회계명: 일반회계 (군의회 의결대상)

(단위: m², 천원)

구분	합계			당초			변경계획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합계	토지	12	134,373	625,602	11	132,192	612,186	1	2,181	13,416
		건물	5	2,655	2,240,626	5	2,655	2,240,626			
		기타									
	매입	토지	11	133,583	620,791	10	131,402	607,375	1	2,181	13,416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790	4,811	1	790	4,811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5	2,655	2,240,626	5	2,655	2,240,626				
	기타										
처분	합계	토지	4	9,942	152,506	3	9,414	8,362	1	528	144,144
		건물									
		기타									
	매각	토지	3	9,152	148,548	2	8,624	4,404	1	528	144,144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790	3,958	1	790	3,958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 규 (발취)

지 방 재 정 법

-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 제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시군의 경우 1억원이상)---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취득의 경우 1건당 (1,000m² 이상)---.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균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4. 재산의 취득기준

가. 2002도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 중요재산이 대상이 된다.

- 매입, 기부채납, 신축, 증축, 양여취득, 교환, 무상귀속 등

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토지를 우선 취득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
-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질수 있는 토지
- 새로운 개발 예정지로서 장차 공공청사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
-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토지
-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5. 재산의 처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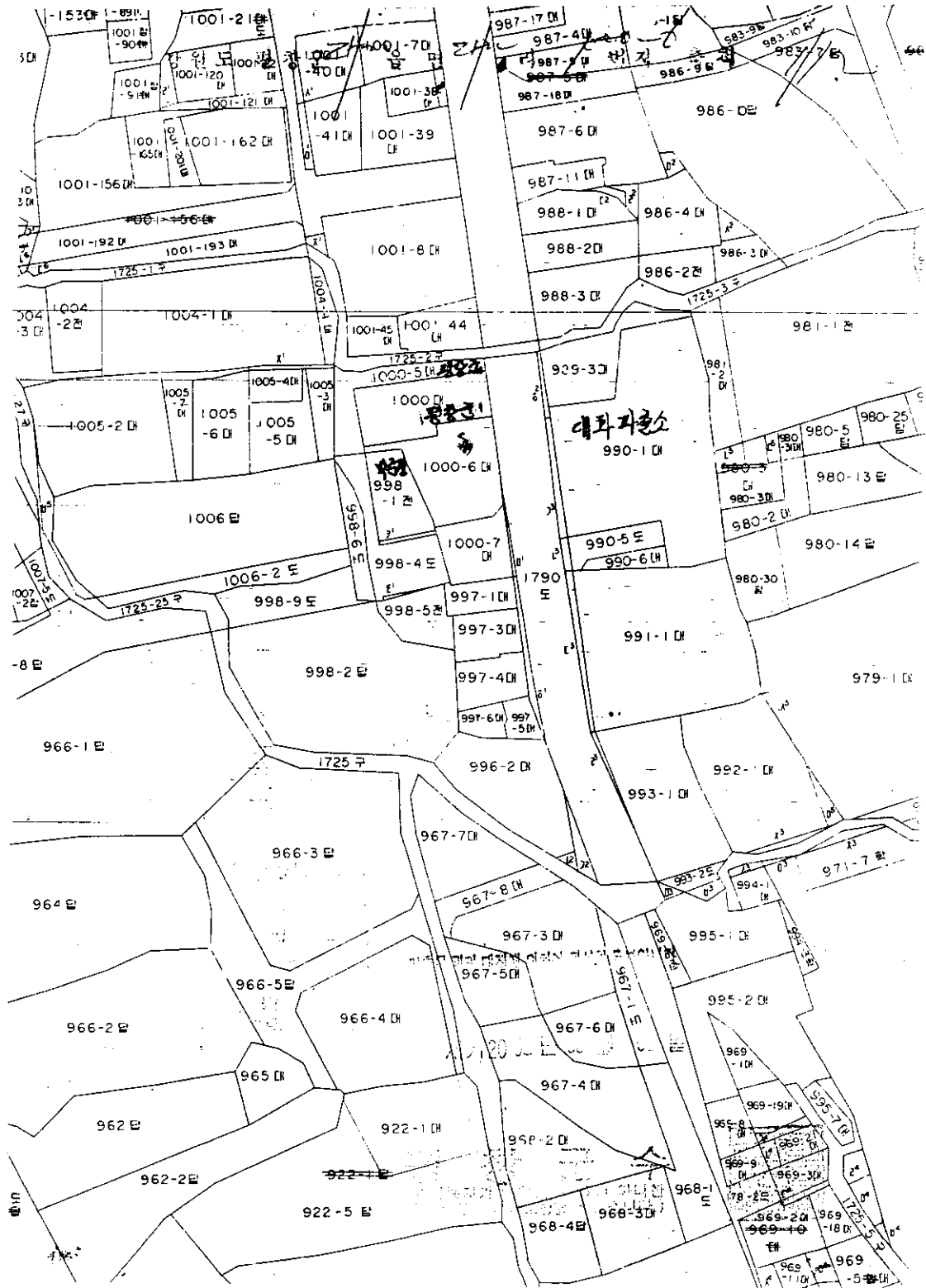
나. 재산의 매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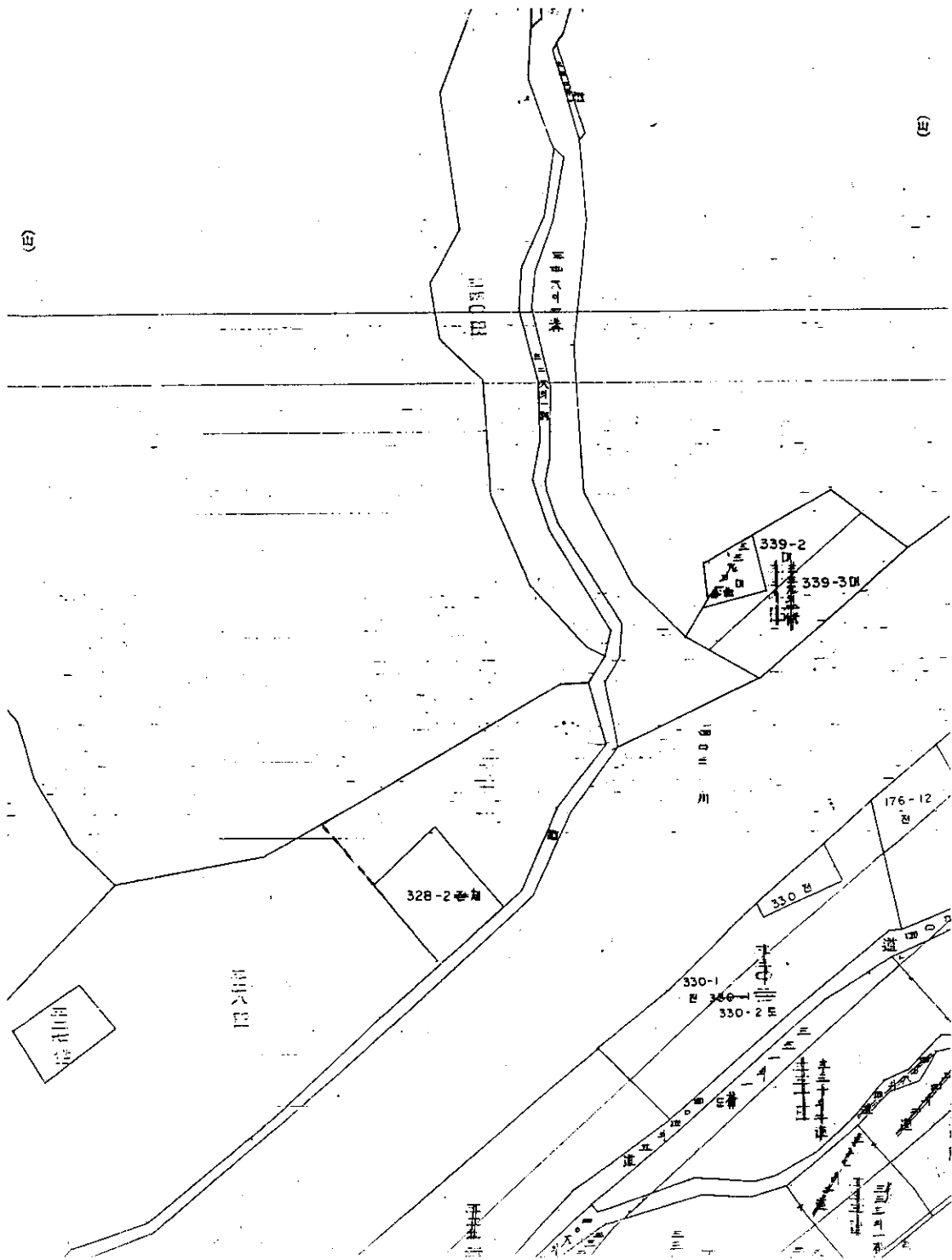
(1)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가) “---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 ① 일단의 토지 면적이 --- 700㎡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
- ②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 지분의 면적이 전①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

(나) “--- 81.4.30. 이전 부터 공유재산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상기 (가)①의 규모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수 있다.





(甲)

(乙)